

들어가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184개였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률안 2만 5,858개의 0.7%에 해당합니다.

물론 발의의 취지와 별개로 혁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혁신 생태계 성장과 발전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지가 아직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 법안의 가결률이 16.3%로 전체 법안의 가결률 11.5% 대비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법안 발의는 많지 않았지만, 혁신 생태계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가결률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혁신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의 한계를 넘어 거침없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해 차세대 유니콘을 탄생시키고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국내외 자금, 인재, 시장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유니콘이 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1부에는 차세대 유니콘 탄생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분석했고, 2부에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보고서가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정책 결정 및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앞으로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며	2
1부. 차세대 유니콘이 나오려면	5
1.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확대	6
2.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모험자본시장 선순환구조 안착	9
3.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유망산업 집중진흥	14
2부. 차세대 유니콘 등장을 위한 과제	19
1.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20
2. 스타트업 M&A,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	27
3.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 설정	37
4.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신중 검토 [독과점 분야]	42
5.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신중 검토 [갑을 분야]	52
참고자료	61

1부.

차세대 유니콘이 나오려면

1.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확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있다고 할 것 인바, 국내 K-스타트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보다 개방적이 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함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제조 등 실물 중심에서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디지털 기업*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2022)
 - * 아이비엠(IBM), 엠에스(MS), 인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테슬라, 티에스엠씨 등
 - (CES 혁신상 수상) 2024년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¹⁾ 혁신상 수상기업(총 522개사)의 많은 비중을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하였으며 특히, 한국 벤처·스타트업 116개가 혁신상을 수상하였음²⁾
 - * 2023년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총 434개사, 609개 제품)의 50% 이상을 벤처·스타트업이 차지, 국내 혁신상 수상기업(총 134개사, 181개 제품) 중 82.8%가 벤처·스타트업(111개사)³⁾이 차지
- 최근에는 벤처·스타트업이 단순히 강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유망한 기업의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1)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획기적인 기술과 글로벌 혁신가들의 시험 무대로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술 행사로 알려져 있는바,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회협(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상임.

2) Wow tale, Record Achievement: 116 Korean Startups Win at CES 2024 Innovation Awards, 2024.1.8.일자 기사 (<https://wowtale.net/2024/01/08/69154/>(최종확인 2024.9.14.))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10385/2023.01.10>일자 기사(최종확인 2024.9.14.))

- 현재 미국 상장 기업들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기업 모두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 출신의 혁신 기업들임⁴⁾.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의 독주는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2018년 이후로 견고히 지속되는 추세로, 이들은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함

<표 1> 미국 상장 기업들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기업(2024.9.14.기준)

순위	회사명	설립연도	최초 VC 투자연도	IPO 시점	시장가치(조)
1	애플	1976	1977	1980	\$3.382
2	마이크로소프트	1975	1981	1986	\$3.200
3	엔비디아	1993	1993	1999	\$2.921
4	아마존	1994	1996	1997	\$1.957
5	알파벳(구글)	1998	1999	2004	\$1.943

*출처: <https://companiesmarketcap.com/>

□ 국내 경제 규모 측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은 이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요 동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경제성장의 주역이 대기업에서 벤처·스타트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K-스타트업 성장에 있다고 할 것임

- (고용) '22년 말 벤처·스타트업(3만 3천개사)의 고용인원은 74만 6천명으로, '21년 말 대비 8.1%(5만 6천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34만 8천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4배 높음. 특히 벤처·스타트업 중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은 29.8% 증가(중소벤처기업부, 2023)
- (매출) '20년 → '21년 매출액: 154조 원 → 188조 원(+22.5%)

4) 최근 스타트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 및 업력, 성장 잠재력 이외에도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유치' 등이 주요 기준이 됨을 지적하고 있는 바, 해당 기업들 모두 벤처캐피탈 투자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광의의 스타트업으로 볼 여지가 있음.

- K-스타트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바, 이는 단순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스타트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K-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는 더 큰 소비자 기반 확보, 수익 창출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야기해 국제적 무대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
 - 글로벌 진출을 통해 해외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등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 특히, K-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갖추어야 함

2.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모험자본시장 선순환구조 안착

고성장 신생기업인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 나아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안착되어야 함

- 스타트업은 고성장 신생기업으로,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을 추구하는 모험자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는 존재
 -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①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② 혁신적인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③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 Blank(2010)는 스타트업을 ‘반복가능하고 확장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했으며, Ries(2012)는 스타트업을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조직’으로 정의⁵⁾
 - ** Love(2016)은 스타트업의 성장주기를 표준화한 ‘제이커브(J-curve)’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 모델은 창업 후 시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낮은 수용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면서 현금 흐름이 최저를 기록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최적화하고 스케일업해 고속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줌⁶⁾
 - *** 최근의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을 정의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 및 성장잠재력 이외에도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유치’ 등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함(Cockyane, 2019)⁷⁾
 - 이같이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성 등으로 인해 사업영위 및 확장에 필요한 전체 자금을 성장단계마다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창업 극초기 단계에는 기업의 생존 불확실성, 투자 위험성이 높아 엔젤투자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의존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시장에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함

5)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국내 벤처·스타트업 금융 생태계 현황과 진단” 에서 재인용

6) “국회미래연구원(2023),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에서 재인용

7)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국내 벤처·스타트업 금융 생태계 현황과 진단” 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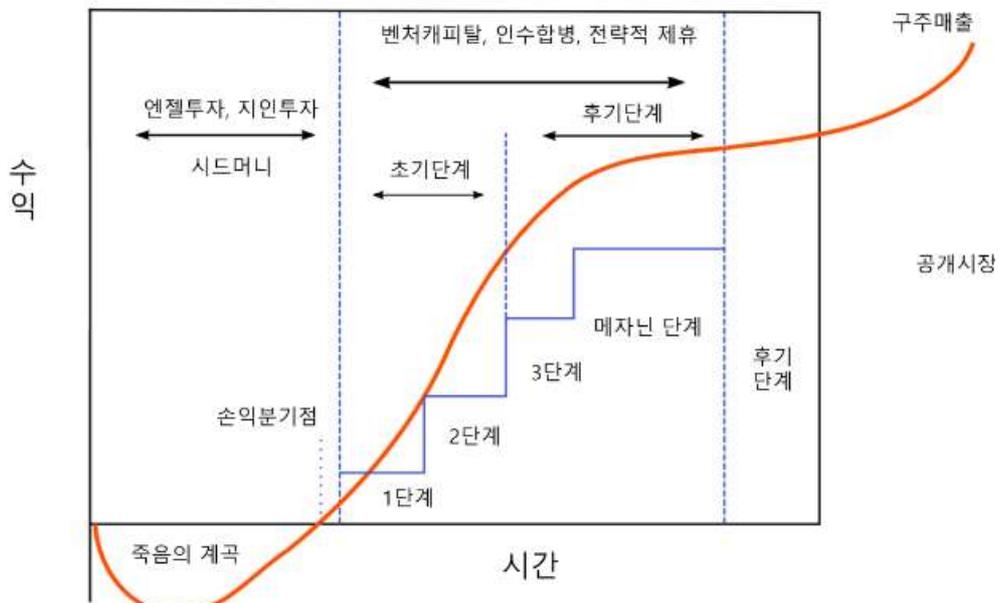
- 단, 일시에 받지 않고 성장단계별로 받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시리즈(series) 또는 라운드(round)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성장단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봐야 함

* 시리즈 A: 브랜딩, 마케팅 등을 통해 매출, 규모 확장(투자금액: 10~50억원)

** 시리즈 B: 고용 확대 및 시장 확장 등 본격적으로 성장(투자금액: 50~200억원)

*** 시리즈 C 이상: 해외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확장(투자금액: 수백억원 이상)⁸⁾

<그림 1> 스타트업 성장단계 모식도



*출처: 유효상(2022), 스타트업, 아름다운 성공, 클라우드나인

-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원천은 모험자본에 있음
- 스타트업은 기술 및 시장성 평가의 한계, 기업 생존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담보물 부재 등의 이유로, 표준화된 여신심사와 고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며⁹⁾,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재투자해 더 큰 이익을 내며 성장하는 일반 기업과 차이가 분

8) 이상의 시리즈 구분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투자유치 가이드북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제시된 시리즈 별 투자금액은 통상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9)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국내 벤처·스타트업 금융 생태계 현황과 진단

명하게 드러남

-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 또는 그 자본을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이라고 하며, 모험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인 모험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함

* 대체적으로 모험자본이라고 표기할 때에는 투자 자본을 의미하며, 모험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주체로서 투자자의 한 유형을 의미할 때에는 벤처캐피탈이라고 표기함

□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스타트업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험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함

- 국내외 유니콘 기업의 자금조달을 분석한 연구결과¹⁰⁾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자금공급 출처는 벤처캐피탈, 기업, PE(Private Equity) 등의 모험자본 투자로, 이들로부터 여러 단계에 거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말 기준 국내외 1,150개 유니콘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당 평균 2억 9천만 달러(한화 약 3,853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니콘 등재 시점까지 평균 5.17 라운드의 투자를 유치함
- 또한 같은 연구에서, 모험자본시장의 성장과 선순환은 새롭게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될 스타트업이 창업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
- 위와 동일한 연구에서 전세계 유니콘의 72.8%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인도 3개국의 유니콘 기업과 국내 유니콘 기업의 유니콘 창업시점을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인도 유니콘 기업의 대다수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창업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창업한 유니콘이 전체 21개중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자는 해외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10) 자본시장연구원(2024), 유니콘 기업 자금조달의 특징과 국내 모험자본시장 시사점

모험자본시장이 유니콘 기업의 창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우리나라는 모험자본시장의 성장이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될 스타트업의 창업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함

* 일각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 배경중 하나로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금융위기를 꼽기도 하는데, 이는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초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월가 자본이 고수익을 기대하며 실리콘밸리에 대량 투자했다는 해석임

□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혹한기에 직면한 국내 모험자본시장에 선순환구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①M&A를 통한 회수 활성화, ②투자재원 다각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22년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모험자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를 꺼림에 따라 모험자본시장 전반이 위축되어 스타트업이 '투자혹한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투자혹한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나, 글로벌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IPO(기업공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M&A를 통한 회수 활성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투자하고, 이들의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정한 시기에 IPO, M&A, 지분매각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Exit)해 재무적 이익을 창출함
 - 그러나 상대적으로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준이 까다로운 IPO의 경우 최근 유가증권시장 침체가 더해져, 국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의 IPO 철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23년 쉐릴, 오아시스 등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 계열사 등 국내 많은 기업이 IPO 계획을 철회했으며, 미국에서는 유망한 스타트업이 상장에 성공했으나 IPO 가격 아래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당분간 유가증권시장 침체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또한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조성되는 등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 투자혹한기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과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다각화 역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국내 모험자본시장은 2005년 설립된 한국모태펀드,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의 공동출자로 2013년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주요 재원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투자가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31%를 차지¹¹⁾하는 등 민간 영역의 투자가 침체된 모험자본시장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CVC의 전략적 목적 투자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가치제고에 필수적이며, M&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모험자본시장 선순환구조 안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대규모 후기 투자 역시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임

*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16~2023년 발생한 스타트업 M&A 가운데 투자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66%가 CVC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M&A 기업가치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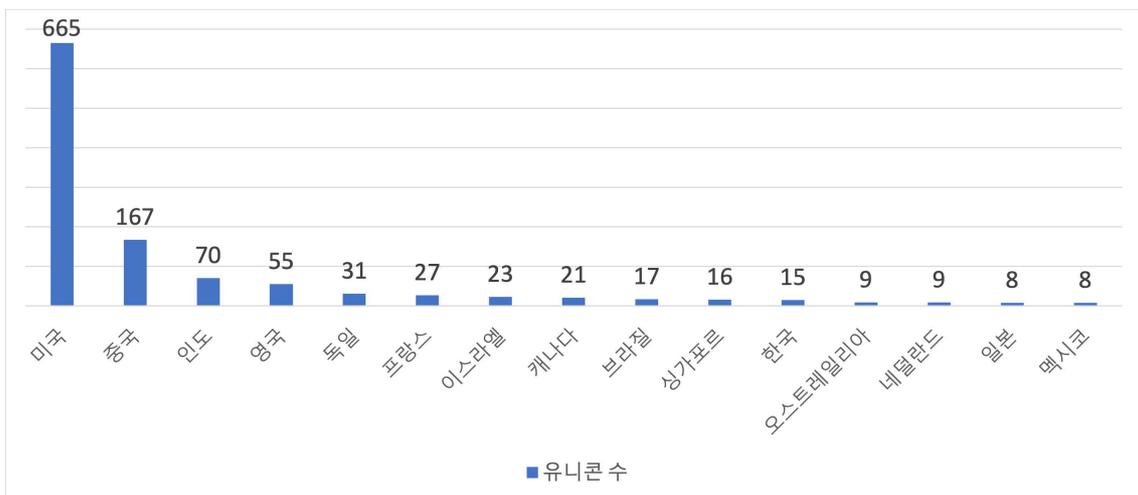
11)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한국의 CVC들: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3.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유망산업 집중진흥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유망하게 평가받는 AI와 플랫폼은 국가적인 진흥이 필요함.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모든 산업영역에 존재하며, 플랫폼 사업모델을 가진 유니콘 스타트업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2024년 7월 17일 기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스타트업 수는 1,243개이며, 유니콘의 기업가치는 총 3조 9,3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¹²⁾
 - (국가 분포) 국가별 유니콘은 미국 665개, 중국 167개, 인도 70개, 영국 55개, 독일 3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15개로 11위를 차지
 - 미국이 전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의 53.5%를 차지했으며, 중국 13.4%, 인도 5.6%, 영국 4.4%, 독일 2.5%로 나타나 2위인 중국도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국가 분포(2024.7.1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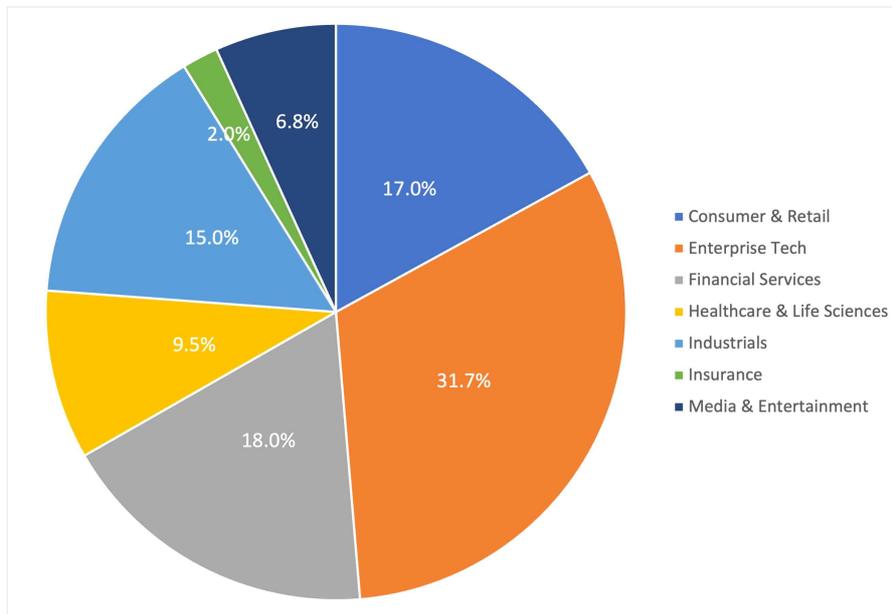


*출처: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12) CB Insights(2024). Global Unicorn Club: Private Companies Valued at \$1B+ (as of July 17th, 2024). URL: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 (산업 분포) 가장 많은 유니콘이 탄생한 분야는 전체의 31.7%를 차지한 엔터프라이즈 기술(enterprise tech)이었음
- 다음으로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18%, 소비자 & 리테일(consumer & retail) 17%, 제조(industrials) 1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산업 분포(2024.7.17. 기준)



*출처: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 상위 100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한정된 경우에도 국가 및 산업 분포가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국가 분포) 미국 57개, 중국 14개, 인도 7개, 영국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스웨덴 2개, 한국 1개 순으로 나타남*
- * 멕시코, 에스토니아, 세이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터키가 100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1개씩 보유
- (산업 분포) 엔터프라이즈 기술(enterprise tech) 32개,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24개, 소비자 & 리테일(consumer & retail) 15개, 제조(industrials) 14개 순으로 나타나 전체 유니콘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100대 글로벌 유니콘의 21%가 AI 기술·서비스·솔루션 등 제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업가치는 총 5,530억 달러로 100대 유니콘 전체 기업가치 1조 6,881억 달러의 32.8%를 차지해, AI는 혁신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볼 수 있음

○ (국가 분포)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 중 AI 관련 제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미국 18개, 중국 2개, 인도 1개 순으로 나타나며, 그 외 국가는 전무함

- AI 스타트업은 아직 상용화나 시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지만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미국에 AI 유니콘 스타트업이 더욱 몰리는 경향이 있음

○ (산업 분포) 엔터프라이즈 기술(enterprise tech) 13개, 제조(industrials) 4개,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media & entertainment) 2개, 헬스케어(Healthcare & Life Sciences) 2개 순으로 나타남

-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 개발과 적용·활용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AI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외에 A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AI 스타트업에 공통된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움

□ 100대 글로벌 유니콘의 48%가 플랫폼 서비스¹³⁾를 운영하고 있어 플랫폼이 여전히 혁신 생태계에서 유효한 유망 사업모델이라는 점을 방증함

○ (국가 분포)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 중 플랫폼 스타트업은 미국 22개, 중국 7개, 인도 5개, 영국 4개 순으로 나타남*

* 독일, 멕시코, 세이셸, 스웨덴,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캐나다, 한국은 100대 유니콘에 포함된 플랫폼 스타트업을 각 1개씩 보유

○ (산업 분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의 산업은 금융 서비스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를 집계함

(financial services) 16개, 소비자 & 리테일(consumer & retail) 11개, 엔터프라이즈 기술(enterprise tech) 10개,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media & entertainment) 7개, 제조(industrials) 3개, 헬스케어(Healthcare & Life Sciences) 1개 순으로 나타남

- 플랫폼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특정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방위에 걸쳐있고 공급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연결되는 사업모델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는 국경의 한계가 없어 전 세계의 경쟁력있는 플랫폼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진출할 수 있음
- 글로벌 유니콘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하는 상황이 유지되기 힘들며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임

□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의 특성을 살펴본 경과, AI와 플랫폼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함

- 기반 기술로서의 AI와 사업모델로서의 플랫폼은 혁신 생태계의 작동 원리와 프레임워크를 변화시키고 있음
-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유효한 사업모델이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경쟁력있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비즈니스 검증에 계속하는 추세임
- AI는 원천기술의 상용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솔루션에 관해서도 시장성에 대한 강력한 검증이 계속될 것이며, 얼마나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AI 경쟁력이 결정될 것임
- 한국 혁신 생태계 역시 AI와 플랫폼에 대한 투자와 지원, 육성을 이어가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한국 시장에 진출할 잠재적인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음

□ 혁신 산업 육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도 개선이며, 특히 주요국과 국내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

- AI 및 플랫폼에 대한 국가적 진흥과 지원은 필수적으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동향을 고려하며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이 혁신 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1) 제도개선, 2) 금융 및 세제 혜택,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음¹⁴⁾
 -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29.5%), 각종 규제 완화(25%) 순으로 응답함¹⁵⁾
- 산업계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면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집중하고, 행정 및 입법기관에서는 제도 면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갖춰 혁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함
 - 정책적으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국내 혁신 생태계에 국내외 자금, 인재, 시장이 유입되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임
 - 이러한 선순환은 혁신 생태계가 국가의 재원이나 사업 등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14) 이규석(2023).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KERI Brief 23-06. 한국경제연구원

15)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2023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부.

차세대 유니콘 등장을 위한 과제

1.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의 창업/자본/인재 등인/아웃바운드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약 해소가 필요함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글로벌 개방성 진단) 한국의 경우, 미국, 영국 등 해외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이 열위 수준에 놓여 있음

*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이란, 국내-글로벌 국가 간 스타트업의 창업, 자본, 인재의 인-아웃바운드 이동이 원활한 수준으로 정의(인바운드: 해외→한국, 아웃바운드: 한국→해외)

○ (정부 동향) 한국 정부도 스타트업 생태계 개방성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책을 공표(’23.8.)

- ’23.2. UAE 순방 및 국내 벤처·스타트업 진출 격려¹⁶⁾

- ’23.6. 프랑스 Station F 방문 및 한국·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참석¹⁷⁾

- ’23.8. 스타트업코리아 전략 회의¹⁸⁾

○ 한국은 미국, 영국 등 해외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 수준(해외 스타트업 비중 및 해외 자본 유치 수준 등)이 열위인 상황

- 국내·외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지표 평가 결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 London과 이스라엘 Tel Aviv는 10점, 미국의 Silicon Valley와 New York은 9점, 미국 Los Angeles와 Boston은 7점을 받았으나,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6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아산나눔재단 외, 스타트업코리아, 2023)

16) UAE 스타트업 전시 참여 및 국부펀드 투자 등 벤처·스타트업 협력 강화 모색

17) 프랑스 유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지원 목적 협업 추진; 이후, 한국판 Station F 신설 계획 발표

18)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발표(글로벌 팀스,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 외국인 창·취업 비자유건 완화 및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등)

○ 특히, 해외 창업 및 진출 스타트업 비중 및 국내 유입 해외 자본 비중 측면에서도 한국의 글로벌 개방성은 해외 선도국가 대비 열위에 놓여 있음

- (해외 창업/진출 스타트업 비중) '22 기준, 한국의 해외 창업/진출 스타트업은 약 3백여 개인 반면, 싱가포르의 약 2천여 개, 이스라엘은 1,6천여 개에 달하는 바, 스타트업 생태계 내 전체 스타트업 수* 대비 비중으로 살펴볼 경우, 한국은 해외 진출 비중이 약 7% 수준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90%, 이스라엘은 약 80% 수준으로 크게 차이남(아산나눔재단 외, 스타트업코리아, 2023)

* 총 스타트업 수는 Crunchbase 기반, '22년 기준, 투자금 유치기록이 있으면서 IPO는 추진하지 않은 경우로 계수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투자금 수준) '20~'22 3년 누적 기준, 자국 내 스타트업에 투자된 총 금액* 가운데 해외 자본의 비중의 경우, 싱가포르는 약 32%, 영국은 약 25%, 프랑스는 약 12% 수준인 반면, 한국의 경우 약 7%에 불과한 수준임(아산나눔재단 외, 스타트업코리아, 2023)

* 총 투자액은 Crunchbase 기반으로 '20~ '22 기준 3년간 누적 기록

□ (인바운드 제약사항)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 시, 불필요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

○ (법인 설립) 외국인이 법인 설립 시, 해외 선도국에 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이 높고 승인 프로세스 전반이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바, 불필요한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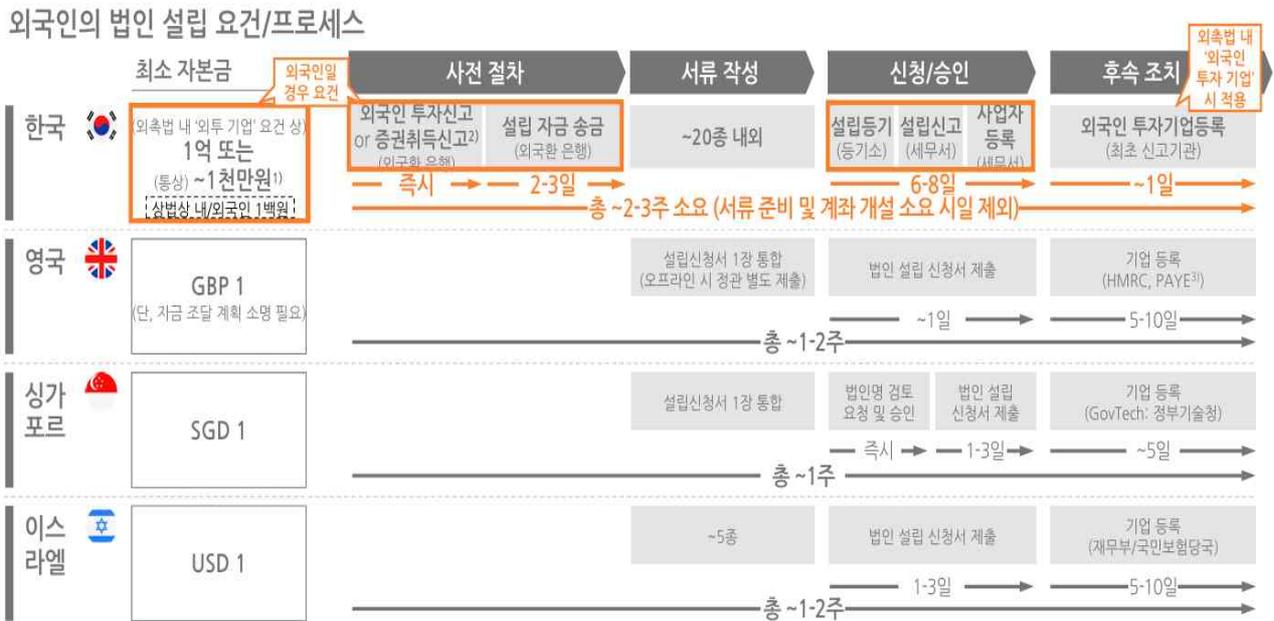
- 외국인의 국내 법인 설립 시, 대외적으로 필요한 법인 설립 자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초기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본금 및 비자 보유 여부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인 설립이 어려움

* 현행 상법 제329조 제2항, 제546조에 따르면, 내외국인 모두 최소자본금인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실제 외국인 비자 발급 지원기관 및 법무사들이 관행적으로 권장하는 자본금은 약 1천만원 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

- 특히,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신고' 및 '설립 자금

의 국내 송금' 절차를 거쳐야하는 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신고 시, 외국환은행 등 담당 기관 현장 방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제약이 있으며, 신고절차 이후 설립자금의 국내 송금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승인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복잡한 승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

<그림 4> 외국인의 법인 설립 조건과 프로세스 국내외 비교



*출처: 아산나눔재단 외, 스타트업코리아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2023)

- (창업 비자) 외국인 국내 창업 비자(D-8-4)는 선도국가 대비, 발급요건, 갱신주기 및 요건, 동반가족 비자 발급 관점에서 난이도가 높은 상황
- 외국인의 국내 창업 비자 발급 시, 1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또는 특허 등록을 통해 획득하거나, 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다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바, 이는 해외 선도국* 대비 난이도가 높음

* 싱가포르와 프랑스의 경우, 정부 공인 액셀러레이터 또는 인큐베이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최소한의 서류 검토만 진행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Endorsing Body)이 사업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비자발급 가능

-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학력 요건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또는 해외 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학력에 대한 별도 요건이 없는 해외 선도국과 비교해 엄격함*

* 실제 과거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했던 마티스 뷔히와 리노 토이테베르크는 ‘Small PDF’ 라는 PDF 파일 변환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대학 학위가 없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모국으로 돌아감. 이 기업은 현재 월 평균 이용자 4천만명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로 성장

- 비자발급 시, 제출서류의 종류(12종)도 해외 선도국* 대비 많고, 비자 신청 시 정부24 민원센터, 출입국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의 방문을 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음

* 싱가포르 6종, 영국 6종, 프랑스 10종 등

<그림 5> 외국인의 창업비자 발급 등 국내외 비교

	한국 (D-8-4 기술창업비자)	싱가포르 (EntrePass)	프랑스 (French Tech Visa)	영국 (Innovator Founder)	미국 (E-2 소액창업투자)
창업비자 발급 요건					
핵심 요건	기관 투자 유치 or 특허 등록	기관 투자 유치 or 액셀러레이팅 선발 ²⁾	기관 투자 유치 or 액셀러레이팅 선발 ²⁾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 공인 기관의 승인	투자 및 비용 집행 ⁴⁾
(핵심 요건의) 보조 요건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OASIS 점수 획득 및 아래 1개 항목 확보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3년+ 연구 목적 체류 창업대전 입상/기자제 창업 아이디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French Tech 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기술 역량 보유 시, 투자 요구 수준 완화 임원/관리직 경력 또는 전문기술
학력	국내 전문학사 or 외국 학사			공인영어성적 (CEFR B2+)	
사업계획		제출-승인은 '불'필요	제출-승인	제출-승인	
법인설립 여부	절차 개시 필요				선행 필요
구비 서류 수	서류 12종	6종	10종	6종	18종
비자 갱신 주기/요건	1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 평가	2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 평가	4년 주기; 사업 존속 시 계속 연장	3년 주기; 사업 존속 시 계속 연장	2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 평가
동반 가족 비자 (한국 기준 F-3)	조건부 발급 (창업자의 재직 증명 및 소득 평가)	조건부 발급 (\$100K 지출 및 현지인 고용)	조건 없이 발급	조건부 발급 (통장 잔고 증명)	조건 없이 발급

* 출처: 아산나눔재단 외, 스타트업코리아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2023)

- (취업 비자) 외국인 국내 취업 비자(E-7-1)의 취득 및 갱신은 선도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학력 및 경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다수의 고용주 제약 사항이 존재함
- 외국인의 국내 취업 비자 취득 시, 근로자에게는 학력과 경력을,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 최대비율과 최소 인력 규모를 적용하고 있음

- 취업 비자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관련 분야 학사학위 및 1년 이상 유관 경력 보유, 5년 이상 유관 경력 보유인 학력·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나, 이는 해외 선도국* 대비 엄격

* (미국: H-1B) 관련 분야 학사 또는 관련 자격증 요구, (영국: Skilled Worker) 고등학교 졸업요건과 동등한 공인인증시스템 Level 3이상 수료 요구, (싱가포르: Employment pass) 학력은 필수 요건이 아닌 가산점으로 운영

- 특히, 별도 고용주 제약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해외 선도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고용주는 내국인 피고용자 수 대비 외국인 20% 이내 채용, 5인 이상(창업가 제외)의 사업체 운영 등을 요구하며 단, 내수 사업 위주의 업체의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

- (해외 투자 국내 진출)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의 국내 진출 시, 법인 설립, 라이선스 취득, 송금 등 복잡한 행정 업무로 인한 제약 발생

-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절차, 필요 서류 및 요건이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

- (라이선스 취득) 요구되는 최소자본금* 및 전문인력** 기준이 해외 선도국 대비 높음

* (최소자본금) 액셀러레이터 1억, 창투자 20억, 신기사 100억(싱가포르는 별도 자본금 요건 없음)

** (전문인력) 전문직/3년, 경력자/상장법인 창업자 등 요구(싱가포르는 자국내 거주 정규직 외 별도 요건 없음)

- (송금) 벤처캐피탈의 경우 소액 투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음에도, 투자금 규모 대비 송금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가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

- (정관변경) 주주변경, 신주발행, 임원변경 등 간단한 정관 변경 시에도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

- (해외투자 제약) 해외 투자에 있어서, 모태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중 제한(60%), 창투투자 40% 국내 의무 투자 제한¹⁹⁾, 계열사 지분 취득 제한²⁰⁾ 등 제약 존재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동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20)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단준 규정으로, 경영지배 목적으로 50% 초과 지분을 취득한 경우 7년 내 엑시트/회수가 필수. 이는 본래 창업 단계 회사에 대한 직접적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지사 설립까지 동시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2 개선방안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음
 - (인바운드: 법인설립) 외국인의 국내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요건이 명확화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음
 -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 신고와 설립 자금의 국내 송금절차에 있어 불필요한 사항들을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 검토 필요
 - (인바운드: 창업비자) 전향적인 학력 요건 폐지를 통해 성공 잠재력을 보유한 외국인 창업가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 서류의 종류 및 형식을 간소화하고, 창업가의 사업계획서, 사업모델 및 사업성 사전 평가를 통해 창업가의 실질적인 사업 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검토 기제 마련 필요
 - (인바운드: 취업비자) 취업비자의 학력, 경력 요건 관련 다면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고용주 제약은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취업 비자 내 고용주 제약의 입법 취지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있다고 해석되는 바, 한국의 경우에도 절충안으로 E-7-1 비자 대상부터 선별적 제약 폐지를 검토 필요(비자제도 원칙상, E-7-1 전문인력은 직능 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운 반면, E-7-4 숙련기술인력은 국민 고용 침해 우려가 있어 보호장치 마련 필요
 - (해외 자본 유입) 라이선스 취득 시, 전문 인력 경력과 최소자본금 요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를 고려하되, 부작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싱가포르의 경우,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바탕,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법무법인, 컨설팅, PE 의견 수렴 등)과 사전 논의를 통해 타당성 및 잠재적 리스크 논의 후 폐지하였는바 단, 정부에 연 1회 펀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시 최대 라이선스 취소하였음. '23년 정부검토 결과, 중대한 위반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 (해외투자 제약) 해외 투자에 있어서, 해외 투자 '주목적' 정책 자금을 신설하고, 창투사 40% 국내 의무 투자 비율은 해외 선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
- 국내 벤처캐피탈 대상 '해외투자가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을 통한 출자를 신설하고, 창투사의 계열사 지분 취득 제한 또한 해외 지사 설립 관련 예외를 적용하도록 개정 검토

2. 스타트업 M&A,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

모험자본시장 선순환구조 안착을 위해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투자재원 다각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M&A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1 현황 및 문제점

- 앞서 1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스타트업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험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안착되어야 함
 -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혹한기에 직면한 국내 모험자본시장에 선순환구조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①M&A를 통한 회수 활성화, ②투자재원 다각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투자혹한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나, 글로벌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IPO (기업공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M&A를 통한 회수 활성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 유가증권시장 침체, 까다로운 상장 요건 등 최근 글로벌 회수시장 전반에서 IPO가 어려운 것과 더불어, 국내에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IPO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4.4년으로 미국의 5.03년에 비해 매우 긴 편임(NVCA, 2024;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
- 또한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조성되는 등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 민간을 중심으로 한 투자재원 다각화, 특히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 역시 모험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국내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과제) 국내 스타트업 M&A 시장규모는 전체 모험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협소해, 스타트업의 M&A는 거래 건수와 시장규모 등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증대가 필요함

○ 모험자본시장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투자된 모험자본이 그 이상의 가치로 회수되어야 하는 바, 국내 스타트업 M&A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수 배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유니콘 기업은커녕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과 스타트업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스타트업에 10의 모험자본이 투자되었다고 가정하면, 안정적인 회수와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수시점에는 해당 스타트업이 10을 초과하는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 M&A 시장규모는 모험자본 투자 대비 매우 협소한 수준으로, 향후 M&A 시장이 수 배 이상 규모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모험자본 회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2021년 정점을 기록한 벤처투자 규모는 전체 17조 258억원으로, 일반적인 벤처펀드 만기시점이 7~8년임으로 고려할 때 2028~2029년에는 이 이상의 금액이 회수되어야 모험자본시장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음.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간배당, 구주 매각 등으로 일부 회수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2024년 기준 만기가 도래한 펀드의 실제 투자액의 약 40%가 중간배당 등으로 회수되었으며, 구주 매각 중심의 세컨더리 펀드 규모는 2024년 약 2조원대²¹⁾, 약 8조원대의 회수가 IPO, M&A 등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국내 M&A 시장규모(=M&A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총합)는 2022년 기준 3조 3,000억원, 2023년 기준 약 2조 5,000억원에 불과해 이중 상당부분이 투자회수에 사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근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스타트업의 IPO가 요원함을 고려하면 모험자본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서는 M&A 시장이 최소 수 배 이상 규모로 성장하여야 함²²⁾

○ 또한 미국은 M&A를 통한 회수가 전체 회수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건수를 기준으로 봐도 M&A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임

- 2023년 기준, 미국은 대표적인 모험자본 투자자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21) 머니투데이(2024.2.27.), 투자회수 어쩌나... 벤처펀드 만기 8조, 받아줄 세컨더리펀드 2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715462731913>

22) 지디넷(2024.7.17.), ‘투자 종말’ 막으려면 스타트업 M&A 활성화 지원책 필요
<https://zdnet.co.kr/view/?no=20240717133732>

받은 스타트업의 95%(695건)가 M&A를 통해 Exit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스타트업 Exit 가운데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58%(86건)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M&A가 취약한 회수시장 특성을 보임

* 미국 NVCA의 자료특성상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 않은 스타트업의 M&A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으로 한정할 경우 M&A 건수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함

<그림 6> 미국 IPO 및 M&A 건수 비교

미국 IPO 및 M&A 건수 비교 (단위: 건) / 출처: NVCA(2024)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901 (100%)	874 (100%)	1,021 (100%)	1,054 (100%)	978 (100%)	1,500 (100%)	1,057 (100%)	735 (100%)
M&A (외부공개)	857 (95%)	806 (92%)	926 (91%)	964 (91%)	865 (88%)	1,307 (87%)	1,018 (96%)	695 (95%)
IPO	44 (5%)	68 (8%)	95 (9%)	90 (9%)	113 (12%)	193 (13%)	39 (4%)	40 (5%)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한국의 CVC들: 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 (국내 CVC 투자 현황 및 활성화 과제)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국내 모험자본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촉진하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전략적, 후기 투자 확대가 필요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국내 모험자본시장이 성장한 데에는 2005년 설립된 한국모태펀드, 2013년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의 역할이 컸음
- 그러나 정책금융 재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언제까지, 얼마나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투입된 자원에 대비한 투자효과성에 대한 의문(“국내 스타트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나”)과 더불어,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의문(“정책금융은 시장실패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자하는 인내자본 역할을 해야 한다”)은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 정책금융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 역시, 민간기업의 유동성 자금을 스타트업 투자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 개정, 민간 주도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 촉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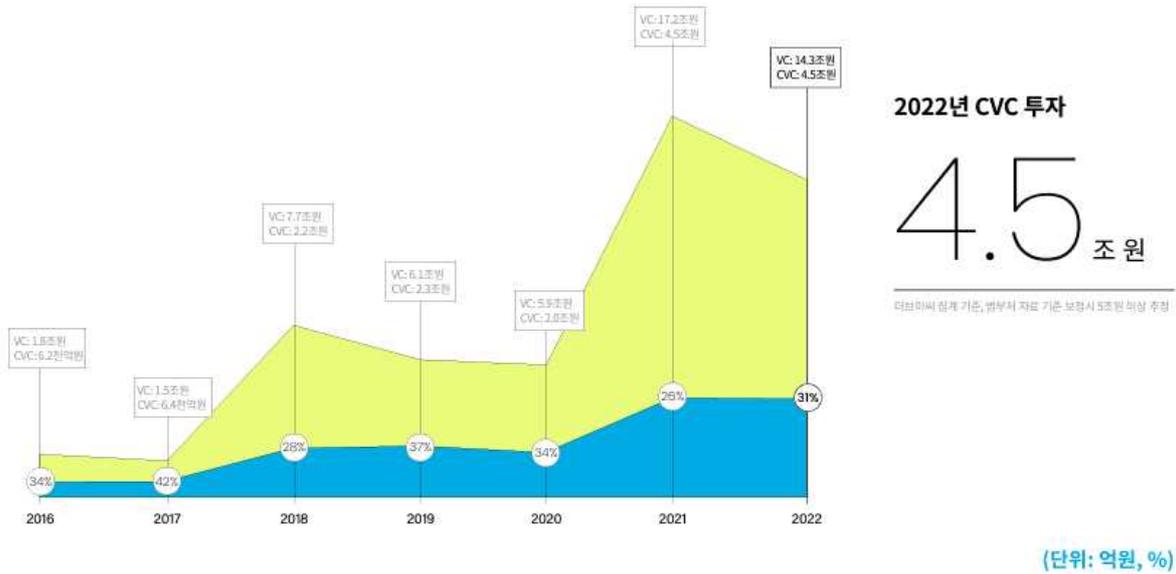
책, CVC와 연계한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더불어, 대형 민간 모험자본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 (공정위: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허용) 2021년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이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었던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일부 행위제한을 두고 CVC 보유를 허용
 -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정책) 2020년 대기업이 수요 기술을 정의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하는 '문제해결형' 방식에서 2022년 민간의 자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업 확장
 - (산업부: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조성, CVC 얼라이언스 출범) 펀드의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펀드 조성을 지원해 여러 대·중견기업의 CVC가 참여했으며, 2023년에는 국내 대·중견기업 42개사가 참여한 CVC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활성화 방안 추진
 -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2023년 4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펀드 결성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 모태펀드는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기로 함
- 2022년 기준, 국내 CVC 전체 투자규모는 약 4.5조원, 전체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은 31%(금액 기준)에 달하는 등, CVC는 국내 모험자본시장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비금융업 일반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금융자본'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투자 자회사를 설립해 모험자본을 운용하는 독립법인 CVC, 사내에 투자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전담인력을 할당해 운영하는 사내부서 CVC를 포괄해 집계한 수치로, 정부가 집계하는 협의의 CVC 투자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특히, 2022년 경기침체로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음에도 CVC 투자는 큰 변화가 없어 CVC 투자가 불경기에 덜 민감함을 알 수 있음

<그림 7> 연도별 국내 VC 및 CVC 투자규모(금액 기준)



항목	전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VC 투자 전체	545,922 (100%)	18,386 (100%)	15,345 (100%)	77,039 (100%)	61,133 (100%)	58,974 (100%)	172,288 (100%)	142,758 (100%)	41%
CVC 투자 전체	166,771 (31%)	6,233 (34%)	6,447 (42%)	21,740 (28%)	22,877 (37%)	19,809 (34%)	45,090 (26%)	44,575 (31%)	39%
독립법인 CVC	80,934 (15%)	3,914 (21%)	3,886 (25%)	9,309 (12%)	13,026 (21%)	11,534 (20%)	21,169 (12%)	18,095 (13%)	29%
사내부서 CVC	85,838 (16%)	2,319 (13%)	2,561 (17%)	12,431 (16%)	9,851 (16%)	8,275 (14%)	23,920 (14%)	26,480 (19%)	50%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한국의 CVC들: 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 그러나 대규모 후기 투자에 집중하는 미국과 다르게 국내 CVC는 후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간기업 자본을 모험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2022년 기준 미국 내 CVC가 참여한 딜(deal) 1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3,780만달러(한화 약 503억원)로, 벤처캐피탈 전체 1건당 평균 투자금액인 1,860만달러(한화 약 248억원)의 2배 수준²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후기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²⁴⁾

23) Pitchbook(2023), NVCA Yearbook 2003

24) 국회미래연구원(2023,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 반면, 국내 CVC는 시드(seed), 시리즈A, 시리즈B 등 비교적 초기 투자에 적극적이고 시리즈D 이상의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16~2022년 CVC 투자 집계한 바에 따르면, 투자단계별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중 CVC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드(seed), 시리즈A, 시리즈B에서 각각 35%, 37%, 35% 수준이나, 시리즈C, 시리즈D 이상에서는 각각 29%, 23%로 감소함(금액 기준)

2

개선방안

- 모험자본시장에 대규모 회수자금을 공급하는 대형 스타트업 M&A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타트업 M&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M&A 참여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함
 -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 대규모 스타트업 M&A 거래를 주도하는 주체는 해외기업인 바, 해외 투자자와 해외기업에 유망한 스타트업이 노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글로벌 투자유치를 지원해야 함
- 국내에서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업 M&A의 총 규모는 22.5조원 수준으로, 이중 42%에 달하는 9.5조원이 해외기업에 의한 것이었으며 해외 사모투자회사의 인수까지 확대하면 이 비중은 더욱 늘어남
- 또한 해외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평균은 1.9조원으로 대기업 4,161억원의 4.6배에 달함

<그림 8> 기업가치 천억원 이상 스타트업 M&A

기업가치 천억원 이상
스타트업 M&A (2016년-2023년)

	스타트업 M&A 전체		기업가치 천억원 이상 스타트업 M&A				
	건수(건)	금액(억원)	건수(건)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기업가치 평균
대기업	132	93,444	17	35%	70,745	31%	4,161
중견기업	65	16,734	4	8%	5,936	3%	1,484
중소기업	125	20,649	3	6%	3,564	2%	1,188
스타트업	226	23,015	3	6%	5,582	2%	1,861
해외기업	16	98,080	5	10%	95,160	42%	19,032
투자회사	30	49,476	17	35%	44,247	20%	2,603
합계	594	301,397	49	100%	225,233	100%	4,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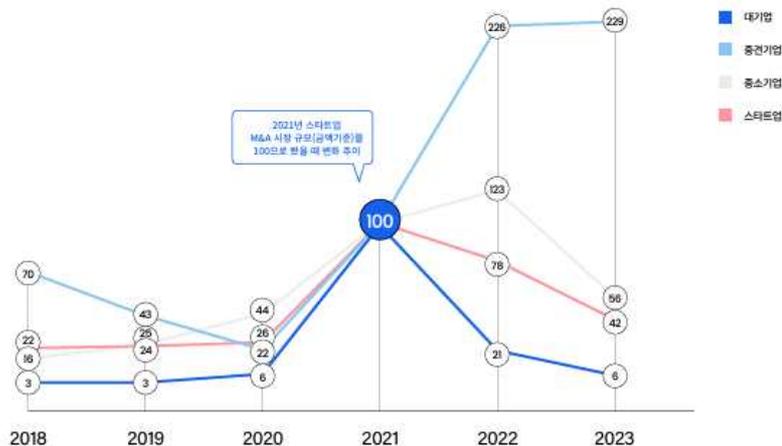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 참여 확대) 최근 스타트업 M&A 시장의 중요한 인수자로 떠오른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해야 함
- 최근 들어 대기업의 스타트업 M&A는 크게 위축된 반면 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는 오히려 규모가 증가했는데, 이들 중견기업은 성장정체와 사업다각화를 위한 이종산업 M&A에 더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인수기업 유형별 스타트업 M&A 시장규모(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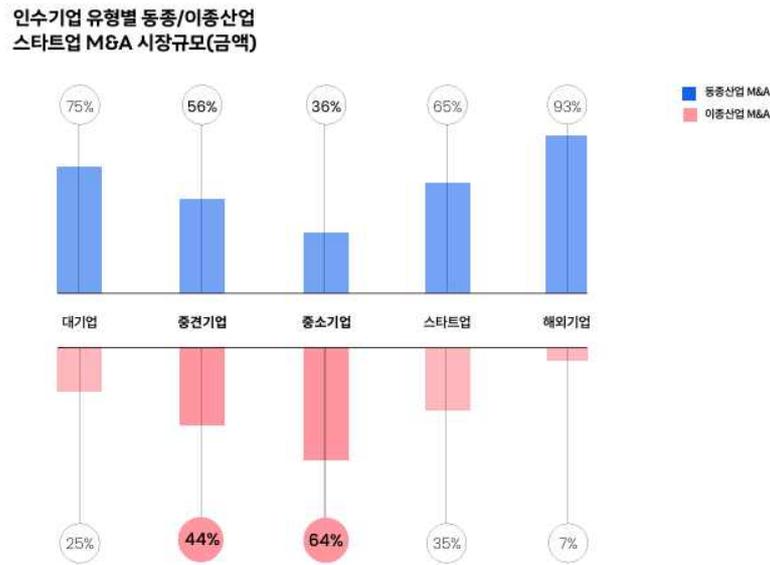
인수기업 유형별

스타트업 M&A 시장규모(금액) 추이 (2021년=100)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그림 10> 인수기업 동종/이종산업 스타트업 M&A 시장규모(금액)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대기업과 비교해 조직내부 역량이 부족하고 스타트업과 교류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잠재적인 인수대상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또한 전략적 목적의 CVC는 시드(seed), 프리A 같은 초기단계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하는데 이는 초기단계에 모기업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제품 개발을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나, 초기단계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보호 수단이 없어 자칫 CVC와 스타트업 사이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양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중재자인 민간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가 기획,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협업, 투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예: 국내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는 2018년 LG디스플레이 CTO조직이 주관한 오픈이노베이션 공모 및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한솔그룹, 2021년부터는 GS그룹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실제로 2021년 블루포인트가 GS에너지와 진행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더지에스챌린지’에 선발된 스칼라데이터는 GS칼텍스, GS에너지 및 계열사와 PoC(사업실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였고 2022년 12월 GS에너지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음

□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투자는 그 자체만으로 모험자본시장에 민간 자본을 유입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CVC 투자유치가 선행된 스타트업의 M&A 기업가치가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보다 높게 나타나 M&A 회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CVC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스타트업의 M&A를 촉진하는 CVC의 기능은 세 가지로, ①CVC 투자를 통해 피인수기업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물옵션(real option)** 기능, ②CVC 투자를 통해 피인수기업이 속한 산업 전반의 기술·시장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인수대상자를 발굴하는 **마켓센싱(market sensing)** 기능, ③스타트업의 가치를 파악, 평가하고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투자역량강화** 기능임²⁵⁾
- 연구 결과, CVC로부터 투자유치를 선행한 스타트업의 M&A 기업가치는 220억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2억원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CVC 투자가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VC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이 M&A에도 적극적임

* 단, M&A 특성상 소수의 대규모 M&A가 기업가치 평균값을 결정하므로, 기업가치는 산술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였음

<그림 11> CVC 투자 여부별 M&A 거래 특징

항목	건수	비율	피인수 스타트업 기업가치		거래 지분 평균(%)	업력 평균(년)
			중앙값(억원)	평균값(억원)		
전체	257	100%	165	1,106	73.3	7.5
CVC 투자 無	88	34%	102	660	72.9	7.0
CVC 투자 有	169	66%(100%)	220	1,279	73.5	7.7
독립법인 & 사내부서 CVC	41	(24%)	372	834	71.1	7.1
사내부서 CVC(only)	51	(30%)	177	2,875	71.1	7.4
독립법인CVC(only)	77	(46%)	183	519	76.4	8.2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5)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한국의 CVC들: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 특히, 스타트업의 M&A, 대규모 후기 투자 등, 스케일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내부서 CVC의 전략적 목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 스타트업이 사내부서 CVC로부터 투자받는 경우 해당 CVC의 모기업 또는 계열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내부서 CVC의 경우 현업과의 실증을 통해 구체적인 협업이나 전략적 시너지 창출을 전제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이기 때문임

* 독립법인 C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실제 해당 CVC의 모기업 또는 계열사에 인수된 경우는 전체의 3%에 불과한 반면, 사내부서 C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해당 기업 또는 그 계열사에 인수된 경우는 전체의 32%에 달함²⁶⁾

- 또한 사내부서 CVC의 경우 모기업과 투자대상 스타트업 간 산업분야가 일치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산업 내에서 시장경쟁력 확보, 신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후기 투자를 견인하는 데에도 사내부서 CVC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CVC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 지원방안은 주로 투자전문회사로서 별도법인으로 존재하는 독립법인 CV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전략적 목적 후기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내부서 CV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26)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스타트업 M&A 현황과 활성화 방안

3.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 설정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자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 하에 입법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1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발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가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AI 법·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영국 등 28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 2023년 제1회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발표된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은 각국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AI의 안전한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과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율해나가기로 한 방침을 담고 있음
 - 특히, AI 기술분야의 선도 국가 정상들뿐만 아니라, 전면에서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미국과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전개 중인 중국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이후,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각국의 AI 법·제도가 고려 단계에 있는 지금 시행을 앞둔 규범인 「EU 인공지능법」의 영향력은 상당함
 - 「EU 인공지능법」은 위험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AI 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의사결정 왜곡, 특정 집단의 취약성 악용, 사회적 평점,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범죄 예측,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직장/교육기관에서의

감정 추론, 생체인식 분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신원확인 등 인간의 기본권이나 존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Prohibited AI Practices)’ 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EU 인공지능법」은 부속서Ⅲ에 따라, 인류의 건강,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시스템으로서 ‘고위험 AI 시스템(High Risk AI System)’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시장 출시 전 영향평가,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보고, 위험관리 의무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밖에도 「EU 인공지능법」은 EU 역내에 위치하지 않은 공급자나 운전자라 할지라도 EU 역내에 AI를 출시하거나 AI 결과물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 역시 유의하여야 함²⁷⁾

* 제3국에 설립된 공급자/운용자의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도록 ‘의도된(intended to be used in the Union)’ 범위 내에서는 그 공급자/운용자에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정부 역시 「EU 인공지능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AI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2대 국회도 AI 기본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2024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AI 규제 방향에 대해,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로 최소한의 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발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은 2024년 2월 열린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을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AI 규제가 혁신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
- 그러나 2024년 6월,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인공지능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AI 규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힘

27)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이슈페이퍼 2024-04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관은 'EU가 고위험 AI 적합성 심사 외에 사회적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품 역시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을 언급
- 또한 2024년 AI 정책 방향으로서, ①AI 핵심기술 확보 및 혁신 인프라 확충, ②AI 일상화 확산, ③글로벌 규범 정립 및 AI 안전성 보장, ④공백 없는 AI 활용 등을 밝힘
- 2024년 9월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의안 기준)된 AI 관련 법안은 총 10개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를 담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위험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담고 있어 「EU 인공지능법」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임²⁸⁾

2 개선 방안

- 세계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AI 규범을 정립해 국제사회에서 입지와 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어, 향후 자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 하에 입법 방향을 설정해야 함
- EU는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AI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이 AI 시장에서 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 역시, 당초에는 EU의 AI 규제론을 지지했으나 자국 기업인 미스트랄 AI(Mistral AI)*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EU 의회에 '고위험 AI 관리 부담을 줄이고 영업 비밀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AI 규제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

28) 법제처(2024), 법제소식 7월호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음²⁹⁾

* 미스트랄 AI(Mistral AI)는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해 비즈니스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IT산업의 불모지 프랑스에서 기업가치 Top5 글로벌 생성형 AI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린 스타트업임.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임³⁰⁾

-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기술 영역에서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적용(AI applications) 분야에서 자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함
-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과 관련한 산업은 크게 6가지로, ①하드웨어(예: NVIDIA의 A100, H100, H200), ②클라우드(예: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③파운데이션 모델(예: 오픈AI의 GPT, 메타의 Llama, 구글의 Gemini), ④LLMOps(LLM Operations, LLM 학습/배포에 필요한 기술), ⑤어플리케이션(실제 서비스 형태로 LLM이 구현된 것), ⑥교육/컨설팅이 이에 해당
- LLM과 관련한 6가지 산업 가운데 상당 영역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 특히 미국 빅테크들이 선점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함
- 이같이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하드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 주요 영역의 패권을 장악한 시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예를 들면 빠른 제품·서비스 출시와 피드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자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따라서 빠르게 자국 스타트업들이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 하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규범 마련에 집중하여야 함

29) 한국경제(2024.2.6.), '괴물 스타트업' 키워낸 佛... 네·카만 때리는 韓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688921>

30) 한국경제(2024.2.6.), '괴물 스타트업' 키워낸 佛... 네·카만 때리는 韓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688921>

-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입장이 다른 해외 법·제도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국내 산업 특성과 영향을 고려한 규범을 마련하여야 함
- 최근에는 소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이 AI 패권을 장악하는 시장 상황에 맞서, 비영어권 국가가 자국의 언어, 문화를 학습시켜 자국 환경에 맞는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Jensen Huang NVIDIA CEO는 “오픈AI와 같은 민간 기업이 AI의 첫 번째 물결을 주도했다면 이후 두 번째 물결은 각국 정부가 고유한 언어와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는 자체적 AI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중점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Arvind Krishna IBM CEO 역시, “모든 국가가 LLM을 포함한 인공지능 전반에서 주권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³¹⁾
 - AI 법·제도 역시, 자국 환경에 맞는 AI 모델과 산업이 영위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AI 기본법과 같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의 경우 산업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을 창출하는 점에서 의의가 큼³²⁾
 -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전통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현재 처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는 EU와 같은 해외의 법·제도를 무분별하게 벤치마킹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³³⁾

31) 이코리아(2024.3.20.), 'AI 주권' 지키자... 소버린 AI 구축 나선 국가는?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17>

32) 머니투데이(2023.10.24.), [투데이 쏘]생성형AI 규제 방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213304582640>

33)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이슈페이퍼 2024-04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신중 검토 (독과점 분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스타트업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혁신을 저해하고, 자국 플랫폼의 보호를 위해 규제 입법을 추진해왔던 글로벌 흐름과도 반대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기구 출범 이래로, 그간 주춤했던 플랫폼 규제 강화 기초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고 있음
 - 22대 국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공정화”와 “독과점규제” 관련) 총 8건 가운데, 독과점규제 분야를 다룬 법안은 4건으로 국회 입법안은 모두 강력한 사전 지정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24.09.02. 기준)

<표 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현황(독과점 분야)('24.6.~'24.8.)

일자	법(안)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
'24.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0371/오기형 의원)
'24.7.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201430/김남근 의원)
'24.7.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1432/박주민 의원)
'24.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202983/오세희 의원)

□ 온라인 플랫폼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전규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정부는 별도의 법 제정 대신 법 개정 방식을 택하고, 사전 지정제 삭제, 입증책임 강화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 온라인 플랫폼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12.부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학계·산업계 등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플랫폼법 제정에서 ’24.9.9. **현행법 개정으로 선회함**

- ’23.12. 부터 추진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은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만약 지정된 기업³⁴⁾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한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10%)을 부과

- ’24.9.9. 공정위는 **독과점 분야의 경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갑을 분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나눠 발표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 예정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4. 9.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 예정

<표 3>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24.9.9.기준)

적용대상	사후추정 (연매출액 4조 이하 플랫폼 제외)
금지행위	4대 행위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기타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제재	임시중단명령, 과징금 상향(매출액의 8%)

□ (우려 1) 여러 입법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전 지정제’ 도입의 경우, 사전 지

34) (적용대상)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정량요건(①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이 GDP의 0.075% 이상+이용자 수가 750만명 이상인 플랫폼 또는 ②연매출액이 GDP의 0.025% 이상+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정성요건(다른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장지배력 및 영향력이 압도적인 것 등)에도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사업자

정 대상을 시장점유율이 아닌, 단순히 사업자의 규모만을 나타내는 발행주식의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 수*(이용사업자 수)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아직 성장 중인 벤처·스타트업 등이 실제 시장을 지배할만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 있음

* 최종사용자 수

- 플랫폼사업자의 사업규모, 이용자 수 등의 정량적 요소는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 판단의 고려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장지배력’ 인정 여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법안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예정하고, 그 판단에 참고하는 시장조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함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의 재량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사전규제 대상의 지정요건이라 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문’,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 기준과는 달리, 객관적 기준이라 할 수 없고 그 개념 또한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함

참고) 현행 공정거래법 「제6조」는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 제외)인 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특히, 서비스 환경은 전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아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하여 시장 내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4.1분기 기준, 온라인 해외 직구 총 거래액 1조 6,476억 원 중 중국 직구 비중은 9,385억 원(57%)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급증(통계청,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
 - '24.02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에서도 중국 플랫폼

폼 알리와 테무가 2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자 수는 매우 가변적(와이즈앱, 2024)

□ (우려 2) 사전 지정제가 삭제된다고 해도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입증 책임 강화, 위반 시 임시중지명령 부과는 플랫폼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 하면서,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로 인해,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가 경쟁제한성 효과가 없는지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는 시장획정 및 시장조사의 능력과 권한이 없는 기업에게 입증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사전 지정된 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우려 3) 특히, 법안이 반경쟁행위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가운데 ‘자사우대의 법률상 금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이미 규율되고 있어 별도의 논의가 불필요함

*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등, 최혜 대우 요구 등

○ (자사우대) 자사우대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자체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음

- 세계 각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율할 대상인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 바,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상품가격 인

하, 품질유지·개선, 소비자 탐색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경쟁·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이 나타남(KDI, FOCUS Vol.136, 2024)

- (끼워팔기) 끼워팔기 금지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가능
- (멀티호밍 제한) 멀티호밍제한 금지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가능
- (데이터 이동·접근 등) 데이터 이동·접근 등 금지의 경우, 이미 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상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고, 만약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한 것으로 그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부당한 제한이 아닌 경우 금지의 당위성 부족
- (최혜대우 요구) 최혜대우 요구 금지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율가능

□ (우려 4) 특히, 온라인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 시도는 국내 벤처, 스타트업 성장의 한계점이 되어, 해당 산업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기업의 신규 시장진입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중국은 '21.02. 디지털 플랫폼 규제(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월간 벤처투자 건수 약 27%, 신규 진입 스타트업 수 약 19% 감소³⁵⁾
 - (국내) '21~'23까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급감했으며 특히,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 '21년 약 17%에서 '23년 약 8%로 반토막(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4)

35) D. Daniel Sokol(2024), "Antitrust Platform Regulation and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China"

* '16년부터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총 271개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중견기업의 비율은 '18년 5.1%에서 '20년 6.6%까지 증가함('22년 기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 자료, '22년)

- 이와 관련해, 벤처·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법 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 벤처·스타트업 주요 단체 플랫폼법 제정에 관한 입장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4.1.29.)	스타트업 52.8% '플랫폼 경쟁촉진법',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벤처기업협회 (24.1.24.)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제정 반대 챌린지' 진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4.1.18.)	'한국벤처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랫폼법 제정 중단' 요구 입장문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3.12.27.)	스타트업에게 '전족'같은 조치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철회 요구

- (우려 5)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밝히지 아니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 대상에 포섭하기 어려우며, 규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음
- (요건 파악의 어려움) ①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의 거래가 대개 해외 직구로 이루어져 있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의 정확한 정보파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② 본사와 서버를 대개 해외에 두고 있어 강제 조사도 어려우며, ③ 현실적으로는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 공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사전규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총매출액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④ 설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이 지닌 실제 영향력과 달리 과소평가될 우려 있음*

*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국내 신고 매출액에 비해 최대 31.5배 높고, 실제 납부한 법인세 또한 보고 수치의 1/30~1/70 수준에 불과, 넷플릭스코리아의 매출액은 국내 신고 대비 2.5배 높고,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22 수준에 불과, 페이스북 코리아의 매출액은 국내 신고 대비 국내 신고 대비 13.3배 높고,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전성민·강형구, 2024)³⁶⁾

- (법 집행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통상마찰*, 본사방침 등을 이유로 해외 기업에게 규제를 강제하기 어려움

* '24.1.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규제하는 접근방식은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라며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 고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음

- CSIS를 포함한 美 씽크탱크나 언론에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국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적용 시,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업에는 오히려 뜻하지 않게 점유율 확대 등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제기³⁷⁾

2

개선방안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제 법률을 도입할 정당성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입법을 진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현행 법률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현행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공정시장경쟁을 위한 감시, 감독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바*, 디지털 시장에 기존 공정거래법 이외에 별도의 규제 법률이 도입되어야 할 만큼의 특수성 혹은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공정위는 '23.1.부터 현행 공정거래법下에서 하위 법령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판단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만을 겨냥한 별도의 규제를 창설하기보다는 기존 현행법체제에서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되, 만약 계약서 작성, 교

36) 전성민·강형구,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2023> 추정 보고서, 2024.

37) 유아름, 경제안보 Review 24-1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2024.

부 의무,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이 필요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규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오히려 ① 여러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고, ② 이용자들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성향이 강하며, ③ 서비스 간 높은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나 점유율 등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시장이므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④ 만약 어떤 플랫폼이 이용사업자 내지 최종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거나 자사의 재화 등과 같은 타 사업자의 것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면,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스스로 시장에서 도태되는 구조임

□ 특히, '사전 지정제' 도입은 아직 성장 중인 벤처·스타트업 등이 실제 시장을 지배할만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사전 지정제가 삭제된다고 해도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입증 책임 강화, 위반 시 임시중지명령 부과는 플랫폼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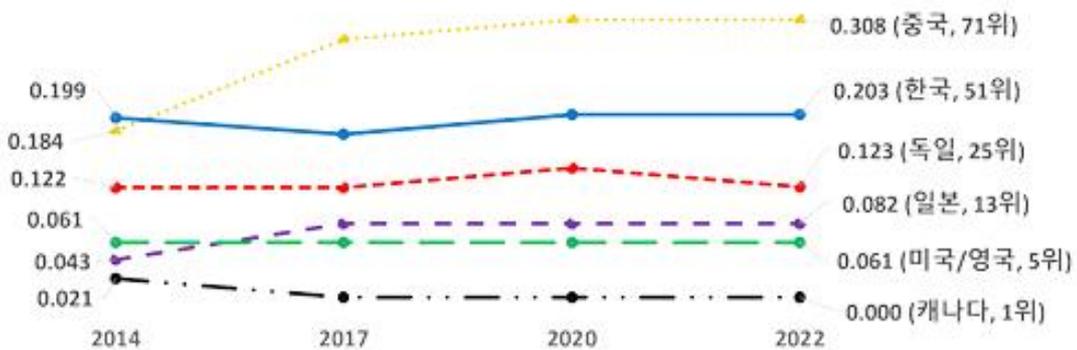
□ 특히, 법안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반경쟁행위 중 '자사우대'는 경쟁촉진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그 밖의 행위의 경우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유형과 상당 부분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법률과 별도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미국, EU 등 해외 선도국들의 경우,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도 철저히 자

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또한 국내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 및 규제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과연 타당한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85개국 중 51위로, 미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시행한 EU의 독일보다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OECD, 2023)

<그림 12> 글로벌 디지털 규제지수 변화와 순위(OECD)



*출처: 권재한, 규제 공화국에 갇힌 디지털 산업, 디지털경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3-10(2023)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미국, EU의 규제는 규제 목적, 적용 대상의 규모 및 수준 등에 있어서 국내 상황과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된 목적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Facebook, Amazon) 견제를 통한 자국 플랫폼 산업 보호’에 있음
- 특히,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던 미국에서도 규제 법안의 대부분이 폐기³⁸⁾되었고, EU에서도 규제 지향적인 DMA, DSA 등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흐름이 자국 산업 보호주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야함
 - (미국) ① 법안 규제 대상의 광범위 및 불명확하고, ②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추가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

38) 미국 하원이 2021.6.경 발의한 5개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비용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을 제외한 나머지 법 모두 폐기

지 않으며, ③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성장 및 혁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EU) DMA의 경우, ① 지금의 규제 적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다각화로 인해 서비스를 정의하고 서비스 간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DSA의 경우, ① 불법 콘텐츠 등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반드시 대규모 플랫폼에서 더욱 만연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② 규모별 차등규제 또한 후기 단계의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플랫폼 성장을 저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표 5> 미국, EU(DMA, DSA) 규제 대상

미국 반독점 패키지 법안	EU 디지털시장법(DMA)	EU 디지털서비스법(DSA)
<p>(대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p> <p>(미국 내, 온라인 시장점유율) 아마존(75%)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애플(55%) (미국 내, SNS 시장점유율) 페이스북(70%) (미국 내, 검색시장점유율) 구글(82%)</p>	<p>대상 중, EU 플랫폼 없음</p> <p>(대상)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애플, 데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5곳, 삼성전자,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p>	<p>EU 플랫폼은 독일의 잘란도(Zalando) 뿐 ('21년 기준 이용자수 5,100만명, 수익 14조 5,654억)</p> <p>(대상) 알리바바, 알리 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MS) Bing, 부킹닷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맵, 구글 서치,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잘란도</p>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발표문(2023)

5.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신중 검토 (갑을 분야)

복잡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산주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획일화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벤처스타트업 등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기구 출범 이래로, 그간 주춤했던 플랫폼 규제 강화 기초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고 있음
 - 22대 국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공정화”와 “독점규제”에 관한) 총 8건 가운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사업자 간의 분야를 다룬 법안은 7건이며,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산주기 법제화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여러 개정안이 발의됨(‘24.9.2. 기준)

<표 6>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현황(독과점 분야)(‘24.6.~’24.8.)

일자	법(안)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
‘24.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0371/오기형 의원)
‘24.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0945/민형배 의원)
‘24.7.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1416/김남근 의원)
‘24.7.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1432/박주민 의원)

'24.8.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2594/김현정 의원)
'24.8.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2202709/서영교 의원)
'24.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202983/오세희 의원)
'24.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202667/고동진 의원)
'24.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202746/이헌승 의원)
'24.8.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202620/송언석 의원)
'24.8.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202622/박정현 의원)
'24.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202523/천준호 의원)
'24.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65/이해민 의원)
'24.8.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8/김남근 의원)
'24.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45/김현정 의원)

□ 온라인 플랫폼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전규제 입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정부는 별도의 법 제정 대신 법 개정 방식을 택하고, 갑을 분야(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 온라인 플랫폼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12.부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학계·산업계 등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플랫폼법 제정에서 '24.9.9. **현행법 개정으로 선회함**

- '23.12. 부터 추진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은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만약 지정된 기업³⁹⁾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한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10%)을 부과
- '24.9.9. 공정위는 독과점 분야의 경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갑을 분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나눠 발표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 예정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4. 9.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 예정

<표 7>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용('24.9.9.기준)

적용 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 ● (1안)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or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 (2안) 연중개거래 수익 1천억원 or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의무 사항	< 정산주기 의무화 > ●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만료일)로부터 10-20일 이내 ● (2안) 월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금별도 관리(수수료 제외) > ● (1안) 판매대금의 100% 별도 관리 ● (2안)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계약서 작성 교부, 표준거래계약서, 협약체결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

□ (우려 1) 티메프 사태와 아무 관련성 없는 온라인 플랫폼 대상 과도한 규제 시도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일개 기업의 일탈로 인한 경영실패의 문제로서, 그 본질은 PG사와 에스크로스 등의 안전한 정산대금 관리방안과 이를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에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플랫폼법과 같은 별도의 법 제정

39) (적용대상)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정량요건(①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이 GDP의 0.075% 이상+이용자 수가 750만명 이상인 플랫폼 또는 ②연매출액이 GDP의 0.025% 이상+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정성요건(다른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장지배력 및 영향력이 압도적인 것 등)에도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사업자

이 아닌 반드시 기존 현행법 체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려 2) 정산주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함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복잡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합리적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

<표 8> 온라인 플랫폼 정산기한 및 대금 별도 관리 법안 현황('24.6.~'24.8.)

법안명	발의자 (발의일)	정산기한	대금별도관리
전자상거래법	고동진 (8.8.)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	의무 없음
	이현승 (8.12.)	구매확정부터 10일 이내	● (대상) 판매대금 100% ● (방법) 예치·신탁
	송연석 (8.7.)	구매확정부터 5영업일 이내	
	박정현 (8.7.)	구매확정부터 3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	● (대상) 판매대금 50% ● (방법)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천준호 (8.2.)	구매확정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 10일 이내	의무 없음
	김현정 (8.14.)	구매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대상) 판매대금 50% ● (방법)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김현정 (8.6.)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의무 없음
	서영교 (8.9.)	공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전기통신사업법	이해민 (7.30.)	●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 (개정안) 이용약관 사전 신고제 도입, 개선권고, 제재 등	
전자금융거래법	김남근 (8.8.)	● (대상) 등록전자금융업자	
	김현정 (8.14.)	● (개정안) 경영지도 기준 미달시 제재 신설	

- (정산기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의 제공을 어렵게 하고, 벤처·스타트업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일일 정산 및 송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구매확정일과 결제일 간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며, 판매 재화 혹은 서비스의 성격이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위탁계약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대금 지급의 용이성이 달라질 수 있음

현장 의견

-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구매 확정일과 소비자의 실제 여행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실제 여행 시작일이 아니라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셀러에게 대금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여행 상품이 공급되기도 전에 셀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하고 만약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여행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 발생
- (핸드메이드 상품 중개 플랫폼) 수제작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소비자의 주문접수 후 제작이 시작될 뿐 아니라 제작 후 주문상품을 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작상품에 따라서는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고 정산을 상품 발송 완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형태
- (프리랜서 인력 중개 플랫폼) 용역서비스 거래에는 서비스 작업 기간이 수반되는바, 불완전 서비스 제공 상태에서 셀러에게 대금 지급 의무화는 서비스의 특성상, 가능하지 않음. 따라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정산주기를 정하기 어려움
- (외부 PG사 이용시 구분) 외부 PG사를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자체 PG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정산기간이 더 소요되는바, 스타트업 등 중소 이커머스 인력 등을 고려한다면 물리적 시간(현실적인 리드 타임)을 확보할 필요 있음

- (판매대금 별도 관리) 판매대금 전부 내지 과도한 비율로 제3의 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강제하고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오픈마켓 업계 전체의 현금 유동성(Cash flow)이 일시에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고,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수천, 수만 개의 계좌를 관리, 송금 운영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비 등이 해당 기업에 수반되어 기존에 없었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외부 PG사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외부 PG사 협업을 위한 내부 관리 리소스 증가 등

현장
의견

-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 취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여행 상품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취소 발생 시 고객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정산 대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할 것을 강제한다면 환불금 정산에서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 비효과적인 상황 발생 우려

- (보증보험, 지급보증) 보증보험 등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료 발생, 보증 형태도 예금 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등 추가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들의 경우 신용도, 재무적 여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상승한다거나 혹은 가입 자체가 거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우려 3) 중개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의 의무 사항은 신속 다양한 거래를 중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계약방식과는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자유롭고 유연한 계약체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서면 계약서 작성 및 제공 의무) 서면계약서 작성 등을 부여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계약 당사자 간 서면 약정 없이 부당한 특약을 정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다수의 당사자와 신속한 거래를 중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사업 운용에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형적인 계약사항을 넘어 사후규제로 규율함이 타당한 내용까지 기재사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의 위축 및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우려 의견은 방통위, 과기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서도 제기되고 있음⁴⁰⁾

-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미 거래조건이 명기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점사업자의 경우 이를 검토한 뒤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의 중개거래에 관해 서면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40) 21대 국회 김병욱, 민병배 의원 발의 온라인 플랫폼법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자료

- (의무 기재사항)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플랫폼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영업 기밀 정보로서, 이는 서비스의 경쟁수단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자의 분석기술 및 투자의 결과물이기도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⁴¹⁾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이 수시로 개선될 수 있는 바, 이를 계약서에 고정적인 형태로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관련 계약서를 수시로 변경해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중개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제재가 수반되는 법률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 소지가 있음

□ (우려 4) 법안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바, 별도의 제정은 유사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과 달리 규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강요, 손해 떠넘기기(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이용사업자 차별 등

** (現 독점규제법(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 (現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와 중복)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치는 방법, 중요사항 미고지·설명 등

41) 알고리즘 공개 시, 해당 메커니즘을 악용하여 입점사업자가 검색과 노출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어뷰징 문제도 예상할 수 있음(실제로 유럽연합의 온라인 중개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검색 결과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명시함)

- (우려 5)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본사와 서버를 대부분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규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정산 기간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여행 분야의 해외 글로벌 사업자(ex.online travel agency)의 정산주기는 통상, 여행객의 호텔 숙박 이용 후 평균 25일 내외로, 여행객이 호텔을 예약하는 시점이 65~70일 전임을 감안할 때, 약 90일 동안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
 - 해외 글로벌 사업자(ex.online travel agency)는 기간의 상관없이 환불 불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지만, 국내 소재의 여행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환불 불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복잡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산주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획일화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은 각자 운영하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산체제를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소비자와 셀러 간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 정산기간을 상품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거나 혹은 셀러의 상품 공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가 반드시 필요함
-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항들은 현행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이미 충분한 감시 및 감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이 별도의 법을 창설하여 규

을해야 할 실익이 없고 특히, 신속한 거래를 중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무 사항(중개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은 오히려 사업자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문헌]

- 권재한(2023), 규제 공화국에 갇힌 디지털 산업, 디지털경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3-10
- 국회미래연구원(2023),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 국회 양향자 의원(2022),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자료(2023), 21대 국회 김병욱, 민병배 의원 발의 온라인 플랫폼법
법제처(2024), 법제소식 7월호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국내 벤처·스타트업 금융 생태계 현황과 진단
-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제6회 국가현안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발표문
-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한국의 CVC들: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 :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 동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2023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스타트업 M&A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이슈페이퍼 2024-04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아산나눔재단 외(2023), 스타트업코리아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
- 와이즈앱(2024) 인사이트: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앱 사용자 역대 최대 갱신
- 유아름(2024), 경제안보 Review 24-1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이규석(2023),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KERI Brief 23-06, 한국경제
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2024), 유니콘 기업 자금조달의 특징과 국내 모험자본시장 시사점
- 전성민·강형구(2024),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2023> 추정 보고서
- 중소벤처기업부(2022.12.26.)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3) '22년 벤처·스타트업 중 벤처기업 고용 세부 동향
- 통계청(2024),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 D. Daniel Sokol(2024), "Antitrust Platform Regulation and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China"
- KDI(2024),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KDI FOCUS Vol.136
- Pitchbook(2023), NVCA Yearbook 2023

[언론보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01.10.), '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

머니투데이(2024.2.27.), 투자회수 어쩌나… 벤처펀드 만기 8조, 받아줄 세컨더리펀드 2조

머니투데이(2023.10.24.), [투데이窓] 생성형AI 규제 의 방향

이코리아(2024.3.20.), 'AI 주권' 지키자…소버린 AI 구축 나선 국가는?

지디넷(2024.7.17.), '투자 종말' 막으려면 스타트업 M&A 활성화 지원책 필요

CB Insights (2024.7.17.). Global Unicorn Club: Private Companies Valued at \$1B+

Wow tale(2024.1.8.), Record Achievement: 116 Korean Startups Win at CES 2024
Innovation Awards

<https://companiesmarketcap.com/>



기획/제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발행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KTS 빌딩, 11F

작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주연 전문위원
jjung@startupall.kr, 02-548-0269
-이지영 전문위원
-윤민혜 매니저

발행 2024.9.24

이 책의 저작권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